소관부서 : 일자리정책과

제정 2019 · 3 · 8 조례 제1470호 일부개정 2019 · 12 · 27 조례 제1564호 일부개정 2019 · 12 · 27 조례 제1569호 (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) 일부개정 2020 · 6 · 30 조례 제1612호 (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 및 「직업안정법」 제4조의2에 따라 이천시가 일자리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0·6·30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9·12·27〉

- 1. "일자리 창출"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취약계층"이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사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 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.
- 3. "취업지원시설"이란 직업 및 취업상담, 알선, 취업정보 제공,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효과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이 경우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사회적·경제적 환경 조성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. 〈개정 2019·12·27〉

- ② 시장은 노동자의 임금조건, 노동시간, 고용 안정성을 갖추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〈개정 2020・6・30〉
-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일자리 정책

- 제4조(일자리 종합 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이천시 일자리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
 - 2.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시장은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 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 - 2.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 - 3. 여성, 장애인,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
 - 4.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
 - 5.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
 - 6.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
 - 7. 공공일자리 사업

- 8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6조(취업 지원 사업)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구인 · 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
 - 2.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
 - 3.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
 - 4.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
 - 5.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(일자리 영향평가)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분석·평가하여,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·12·27〉

제3장 일자리위원회

- 제8조(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,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, 일자리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일자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9·12·27〉
 - 1.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5조,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9조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9·12·27〉
 -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〈개정 2019·12·27〉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

력해야한다. 〈개정 2020 · 6 · 30〉

- 1. 시 일자리 관련 국·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
- 2. 이천시의회의원 2명 이내
- 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
 - 나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
 - 다.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 (단, 어르신, 청년, 여성,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)
-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제 3항제1호에 포함되는 일자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
- 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11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1.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
 -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-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5.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
- 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,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장 일자리 지원시설 등

- 제16조(일자리 지원시설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구인 · 구직 상담 및 알선
 - 2. 취업 지원 교육 운영
 - 3.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
 - 4.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창업 보육 공간 지원, 정보제공, 교육,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2. 창업 자금 및 전시 · 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
- 3.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17조(행정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 - 2.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 - 3. 제16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
 - 4.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・교육・홍보에 필요한 사업비
 - 5.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, 개인,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・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 -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·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, 추천, 공적심의 등은 「이천시 포상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8조(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)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, 단체,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,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·개인 또는 기관·단체,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·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 한다.〈개정 2019·12·27〉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9·12·27 조례 제156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9·12·27 조례 제1569호,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」제14조제2항, 「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9조제3항, 「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제8조제2항, 「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제19조 제8항, 「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・운영 조례」제17조, 「이천시 동부권광역자 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제17조제2항, 「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제4항, 「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2 조제2항. 「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24조. 「이천시 시립박물관 설 치 및 운영 조례 | 제23조제1항, 「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| 제12조제2항, 「이천 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, 제42조제2항, 「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, 제13 조, 「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9조제3항, 「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5항, 「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9조제2 항, 「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제3항, 「이천시 장사시설의 설 치 및 관리 조례 | 제19조제2항, 「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| 제6 조제2항, 「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9조제4항, 「이천시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31조제1항, 「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」제6조 제3항, 「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」제10조제2항, 「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」제23조, 「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」제12조제3항, 「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2항, 「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, 「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・운영 조례」제7조제2항, 「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, 제26조제1항, 「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, 제15조,

「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제4조제1항, 「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제11조제2항, 「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」제5조, 「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」제7조제4항 및 「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제15조 중"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"를 각각"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"로 한다.

부칙〈2020·6·30 조례 제1612호,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